### LS 윤리규범

LS경영철학의 근간인 윤리성을 바탕으로 LS의 모든 회사 및 임직원이 지켜야 할 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LS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실천과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.

####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

- 1. 고객존중
- 2. 진실한 정보 제공
- 3. 고객에 대한 응대
- 4. 고객에 대한 가치제공: 품질 신뢰성, 안전성 강조
- 5. 고객의 이익보호: 비도덕적 행위 금지

### 제 2장 공정한 경쟁(경쟁사)

- 1. 정당한 정보의 입수 및 활용
- 2. 정당한 경쟁우위 확보
- 3. 부당한 담합 금지
- 4. 법규 및 상관습 존중

### 제 3장 공정한 거래(협력업체)

- 1. 공정한 절차에 의한 거래처 선정: 선정절차 규정/제도화, 평가항목, 평가방법, 학연/지연 등 배제
- 2. 공정한 거래와 평가: 파트너십 통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
- 3.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
- 4. 협력업체 지원
- 5. 부당한 행위 금지: 8가지 부당한 행위 유형 금지
  - ① 부당한 구매 강요
  - ② 거래상대의 부당한 제한
  - ③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
  - ④ 부당한 검수 행위
  - ⑤ 대금지급의무 미이행
  - ⑥ 특정거래처 차별 행위
  - ⑦ 계약의무 일방적 변경, 폐기 행위
  - ⑧ 기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

# 제 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

- 1. 임직원 품위 유지: 폭언,인격비하 발언 등 사해행위 금지
- 2. 회사재산 및 정보보호: 소셜 네트워크 ,인터넷 통한 정보 회사 주요문서 부당 유출 또는 사용 금지
- 3. 공정한 직무수행
- 4. 정직하고 공정한 보고
- 5. 직무,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 금지
- 6.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
- 7. 직장내 성희롱 방지
- 8. 정치활동 금지: 불법적 기부 또는 자금 제공 행위
- 9. 윤리규범 준수

# 제 5장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책임

- 1. 인재의 육성
- 2. 능력과 업적에 대한 대우
- 3. 건전한 의사표시의 보장
- 4.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
- 5.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: 창의적 환경 및 자기계발 지원

#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

- 1. 합리적인 사업전개: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사업 전개
- 2. 국가.사회발전에 공헌: 지속 가능한 경영,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상호 협력 및 동반성장 지향
- 3. 주주의 권리 및 이익 보호: 정확한 회계처리 및 공시, 불법적인 허위, 변칙거래 금지
- 4. 환경의 보호: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 우선적 고려

###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

- 1. 고객의 존중
  - 1)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고객의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.
  - 2)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에 있어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- 2. 진실한 정보 제공
  - 1) 고객에게 진실한 정보만을 전하며,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.
  - 2) 고객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감추지 않으며, 경쟁사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비교를 하지 않는다.
- 3. 고객에 대한 응대
  - 1) 고객과의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반드시 지킨다.
  - 2) 고객으로부터 A/S실시요청, 정당한 교환요청이나 반품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답한다.

- 4.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
  - 1) 윤리성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상호 존중과 배려, 신뢰를 통해 고객에게 참되고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 - 2)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,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다.
  - 3) 품질 신뢰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한다.
- 5. 고객의 이익 보호
  - 1) 고객의 재산을 내 것처럼 보호하고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.
  - 2) 고객의 정보를 취득한 경우 무단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.
  - 3)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침해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### 제 2 장 공정한 경쟁(경쟁사)

- 1. 정당한 정보의 입수 및 활용
  - 1)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취득하지 않는다.
  - 2) 정당하게 입수된 경쟁사의 정보라도 부당하게 외부 누설 않는다.
  - 3) 입수된 정보는 소비자 및 경쟁사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정당 하게 활용한다.
- 2. 정당한 경쟁우위 확보
  - 1) 경쟁사가 보유한 모든 분야의 유·무형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으로 침해하지 않는다.
  - 2) 경쟁사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광고 등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.
- 3. 부당한 담합금지
  - 1) 경쟁사와 판매가격, 판매조건 및 지역배분 등에 대해 담합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.
  - 2) 동종 거래처들과 부당한 협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.
- 4. 법규 및 상관습의 존중
  - 1)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.
  - 2) 국제개발기구(OECD)의 「국제 상거래 뇌물방지 협약」과 한국법의 「국제 상거래 뇌물 방지법」을 준수한다.

# 제 3 장 공정한 거래(협력업체)

- 1. 공정한 절차에 의한 거래처 선정
  - 1) 거래처를 공정한 평가기준으로 선정, 등록할 수 있게 「거래처 선정절차에 관한 제반 규정과 제도」를 정립하고 실행한다.
  - 2) 거래처 선정절차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평가방법을 선정한다.
  - 3) 거래처를 선정하는데 있어 혈연, 지연, 학연 등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압력, 청탁 등을 배제한다.
- 2. 공정한 거래와 평가
  - 1) 협력업체와 Partnership을 통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실현한다.
  - 2)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때에 서로 제공하며, 정보의 외부 노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다.
  - 3)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며, 평가된 거래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.
  - 4) 거래의 개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반영한다.
  - 5)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받는다.
  - 6) 회사가 명백히 잘못하여 거래처가 피해를 입는 경우 공정하게 배상한다.
  - 7)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3.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유지
  - 1) 거래처로부터 금품, 용역, 향응, 기타 편의 등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.
  - 2)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·지연·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  - 3)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 기술을 사전승인 없이 이용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.
- 4. 협력업체의 지원
  - 1) 협력업체의 실질적인 육성을 위해 협력업체 육성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.
  - 2) 상기 지침은 협력업체의 자격·권리·의무를 명시하고,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 실질적 육성을 위한 운영기준을 포함한다.
- 5. 부당한 행위 금지

###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- 1)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제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
- 2) 거래처와 경쟁사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금지하거나, 거래 지역 또는 거래상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
- 3) 거래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, 구매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
- 4) 거래처의 정당한 반품 요구를 거절하거나, 주문한 물품의 수령거부, 지연 및 부당하게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하는 행위
- 5) 대금 결제조건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
- 6) 특정 거래처를 차별하여 거래가격, 거래조건, 거래 내용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
- 7) 거래처와 서로 합의한 계약상 의무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폐기하는 행위
- 8) 기타 공정거래에 관한 관계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

### 제 4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

- 1. LS 임직원으로서 품위 유지
  - 1)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 유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- 2) 직장 내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,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한다.
  - 3) 각종 루머, 유언비어 조성 및 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- 4) 조직관리에 있어 폭언, 인격비하 발언 등을 통해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문화를 해치는 사해(社害)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- 5) 학벌, 성별, 종교, 혈연, 출신지역, 연령, 장애, 결혼여부, 국적, 인종 등에 따른 파벌이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.
- 2. 회사 재산 및 중요 정보의 보호
  - 1) 회사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요하고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보고를 하고 조치를 취한다.
  - 2) 회사의 물적재산, 지적재산권, 영업비밀 등은 철저하게 보호 해야 하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.
  - 3)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,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- 4)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 규정에 의거 보안을 유지하며, 회사 정보의 대외 공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.
  - 5) 소셜 네트워크(페이스북, 블로그, 카페 등)나 인터넷을 통해 회사의 중요문서나 정보를 부당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.

TOP

TOP

TOP

### 3. 공정한 직무수행

- 1)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-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
  -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, 공동재산취득, 금전대차 행위
  - 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
  - 직무태만, 관리감독 소홀, 월권 행위
  -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  - 문서 또는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
  -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 행위
- 2) 업무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례를 제공 받지 않으며, 부득이하게 사례를 받은 경우 회사에 신고한다.

#### 4. 정직하고 공정한 보고

- 1)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를 조작하거나 허위보고 함으로써 상위자 및 관련부서의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는다.
- 2) 모든 거래는 회계의 근간인 신뢰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의해 장부 등에 기록한다.

### 5. 직위·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 금지

- 1) 재직 중에 직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피고용을 약속 받거나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2)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개인적인 사업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산임차, 금전대차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.
- 3) 상위자는 그 조직 또는 하위자에게 개인적인 용무 등을 시키거나 묵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.
- 4)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사규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, 상사로부터 법규 및 사규에 맞지 않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, 그런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

### 6.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

- 1) 회사와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외부업체를 직접 경영 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.
- 2)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이중으로 고용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담, 조언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.
- 3) 타 회사에 고용되거나 타 회사에서 현 직무와 유사한 일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 승인 받는다.
- 4)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회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회사주식의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.
- 5)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거래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
#### 7. 직장내 성희롱 방지

- 1) 직장 내에서 성적 유혹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농담, 신체적 접근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의욕을 감소 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2)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, 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항상 조심한다.
- 3)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회사 내에서 성희롱으로 인해 회사 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
### 8. 정치활동 금지

- 1) 회사는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 의사를 존중하되, 임직원의 신분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.
- 2) 정치단체,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불법적인 기부금이나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.

#### 9. 윤리규범 준수

- 1) 윤리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며,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2)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를 한다.

TOP

# 제 5 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

### 1. 인재의 육성

- 1)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,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지원하며 활성화 시킨다.
- 2)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,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한다.

### 2. 능력과 업적에 대한 대우

- 1)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(교육,직무이동, 진급, 보직결정 등)를 학벌, 성별, 종교, 출신지역, 연령, 장애, 결혼 여부, 국적, 인종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.
- 2) 회사는 능력과 업적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 및 공개하고,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한다.

### 3. 건전한 의사표시의 보장

- 1)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, 건의 및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.
- 2)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,개인의 종교·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.

# 4.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

- 1)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 수행상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 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- 2) 특히, 위험물, 유해물, 위해 요인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다.

### 5.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

- 1)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한다.
- 2) 회사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자기개발과 역량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.

TOP

###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

# 1. 합리적인 사업 전개

- 1) 회사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.
- 2)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.
- 3) 올바르고 합리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제한다.

## 2. 국가·사회발전에 대한 공헌

- 1) 학벌, 성별, 출신지역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.
- 2)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.
- 3) 사회 각계 각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- 4)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한다.
- 5) 지속가능경영으로 사업활동의 체질을 끊임없이 개선하며, 기업가치를 제고한다.
- 6) 기업경영 전반에 윤리성을 근간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상호 협력하고, 동반성장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.

# 3. 주주의 권리 및 이익 보호

- 1)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, 제안,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.
- 2) 직무상 취득한 내부 또는 타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을 하지 않는다.
- 3) 대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.
- 4) 정확한 회계처리 및 공시를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.
- 5) 거래관행이 투명하지 않은 개인, 거래처, 국가와의 거래는 가급적 삼가고, 불법적인 허위, 변칙거래를 하지 않는다.

# 4. 환경의 보호

- 1)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금지하며,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한 적절한 투자를 한다.
- 2)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며,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준, 관계법령,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.
- 3) 제품의 개발, 생산, 유통, 판매 및 폐기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.